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,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,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9개의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공유수면
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

제1조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6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제8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의 서식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2호의 서식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부령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환경부령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 중 “특허청장”을 “지식재산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의 개정)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9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“으로 한다.

제9조(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환경
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
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
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8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신청 등) ① (생략)	제4조(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9조에 따라 <u>환경부장관</u> 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)	6.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
7. ~ 9. (생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(매립면허 신청) ① (생략)	제24조(매립면허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9조에 따라 <u>환경부장관</u>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) 9. ~ 12. (생략) ③·④ (생략)	8.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9. ~ 12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

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지구대기감시망의	구축·	제2조(지구대기감시망의	구축·	
운영 등) ① 「기후·기후변화		운영 등) ①	-----	
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		-----		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2		-----		
항제1호에서 “ <u>환경부령</u> 으로 정		-----	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	
하는 관측장비·관측환경·관		<u>령</u> -----		
측방법 등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		-----		
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		-----		
다.		---		
1. ~ 3. (생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제6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		제6조(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		
절차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		절차 등) ①	-----	
서 “ <u>환경부령</u> 으로 정하는 국제		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령</u> -----		
기구 기준”이란 법 제18조제1항		-----		
제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		-----		
정부 간 협의체가 주관하여 마		-----		
련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관련		-----		
기준을 말한다.		-----		
② ~ ④ (생략)	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6조(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) ① (생략)	제56조(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<u>특허청장</u> 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식재산청장</u>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수입자등의 준수사항) ① (생략)	제19조(수입자등의 준수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②법 제42조제5항,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제6항 또는 「채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는 「대외무역법」 제12조에 따라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공고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을 준수해야 하며,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「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</u> <u>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유해방오도료) 법 제2조제9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란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.	제5조(유해방오도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<u>환경부장관</u> 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	1. ----- ----- 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--- ----- -----
2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<u>환경부장관</u> 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·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	2. ----- ----- 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</u> --- ----- -----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
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) ① (생략) 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및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및 <u>해양수산부</u>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	제2조(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 <u>산업통상부</u> 및 ----- ----- -----.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및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	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 ----- -----.

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)	제2조(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) -			
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	-----			
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	-----			
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가목	-----			
에서 “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	-----			
준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	-----			
준을 말하며, 그 세부 내용과 적	-----			
용 방법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	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			
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	-----			
정하여 고시한다.	-----.			
1. ~ 3의3. (생 략)	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			
4.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	4. -----			
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	-----			
기준으로서 <u>산업통상자원부장</u>	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			
<u>관</u>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	-----			
는 기준	-----			
제3조(환경친화적인 에너지) 법	제3조(환경친화적인 에너지) ---			
제2조제3호나목에서 “액화천연	-----			
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	-----			
환경친화적인 에너지”란 다음	-----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-----			
에너지를 말한다.	-----.			
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에너지	7.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5조(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 의 인증 기준)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 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의 의견 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.	제5조(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 의 인증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 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 술 기준으로서 <u>산업통상자원 부장관</u>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	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 관</u> ----- -----
제6조(인증의 신청 등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인증의 신청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 박 또는기자재의 인증과 재인	④ ----- ----- -----

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----- <u>산</u> <u>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.
제7조(인증의 평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·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7조(인증의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산</u> <u>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.
제9조(예비인증) ① ~ ⑦ (생략)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·평가,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제9조(예비인증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.